

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운영 변경사항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본교에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운영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1. 목적 : 정상등교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강화

2. 변경사항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허가 기간	연간 57일 이내 (가정학습 포함)	연간 20일 이내 (가정학습 포함)	
적용 학교급	초, 중, 고, 특수학교	초, 중, 고, 특수학교	

※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-1464(2023.2.6.)호를 근거로 바로 적용함.
(단위학교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학칙은 본 공문을 근거로 바로 적용, 개정절차 생략)

3. 참고사항

가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모든 유형을 통합하여 연간 20일 이내로 운영한다.

예시1) 기존 교외체험학습 20일, 가정학습 10일 사용 - 불가능(교외체험학습 연간 20일 초과)

예시2) 기존 교외체험학습 15일, 가정학습 3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2일)

예시3) 가정학습 20일 사용 - 가능(잔여일수 없음)

나.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
다.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.

라.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 이때,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.

사. 상기 변동사항 이외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세부운영 지침에 따름.
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서식은 [학교홈페이지]-[공지사항]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
2023. 2. 20.

하 중 초 등 학 교 장